

비축시설 대여제도

□ 개 요

- 국내 석유수급 차질 예상 시 정유사, 수입사, 석유다소비업자 등에 비축시설을 적기에 대여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물가 안정 도모

□ 비축시설 대여 요건

- 지원 대상 : 정유사, 수입사, 석유다소비업자, 외국석유회사, 탱크터미널사업자,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 등
- 대여 사유 및 기간

구 분	대 여 사 유	기 간
비축시설 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시설장애에 따른 수급 차질 및 성수기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 시○ 물류비 절감, 국제수지개선 가능 시○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○ 기타 산업부 장관 인정 시	2년 이내 (초과시 정부 승인)

- 운용근거 :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

□ 추진실적

- '82년 이후 '17년말까지 비축시설 44백만배럴 대여